

『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손홍섭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,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운영원칙을 수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
-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8조~제11조)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2조~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